

의안번호	제3035호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5. 11. 14.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035호
----------	--------

제출연월일: 2025. 11. 14.

제출자: 고성군수

1. 제정이유

반려동물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놀이터의 기능(안 제3조)
- 다. 관리 및 운영 · 운영방법(안 제4조~제5조)
- 라. 입장의 제한(안 제6조)
- 마.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복지지원과-40530(2025. 10. 24.)호]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5-1594호
 - 가) 예고기간: 2025. 10. 10.~2025. 10. 30.(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과 같음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
2. “반려동물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군수 또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제공
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놀이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직접 놀이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두어 운영상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용자의 준수사항 안내
2. 놀이터 관리 및 환경정비
3.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 확인 및 출입대장 작성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방법) ① 놀이터는 무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름철(4월~10월): 10:00~18:00
2. 겨울철(11월~3월): 10:00~17:00

② 반려동물(대형견, 중·소형견) 입장 주일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반려동물(대형견, 중·소형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대형견): 체고 40cm이상, 체중 25kg이상
2. 반려동물(중·소형견): 체고 40cm이하, 체중 25kg이하

④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추석날

⑤ 제1항의 운영시간 및 제2항의 반려동물 입장 주일, 제4항의 휴무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
3.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
4. 광견병 예방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반려견
5. 그 밖에 관리자가 다른 사람과 반려동물에게 불편 또는 피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놀이터 이용자는 놀이터 내에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놀이터 이용자의 세부적인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안전관리) 관리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 [별표]

이용자의 준수사항(제7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 가. 반려동물 놀이터에는 견주와 반려동물이 반드시 함께 입장해야 하며, 입장 전 별지 서식의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확인 및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견주가 직접 반려동물을 관리해야 한다.
- 나.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하며 보호자의 책임하에 보호·관리를 받아야 한다.
- 다. 놀이터 입장 시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반려견의 배설물과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야 한다.
- 라. 놀이터 입장과 퇴장 시에는 목줄을 착용한 상태로 이동한다.
- 마. 견주는 반려동물만 두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퇴장할 수 없다. 다만, 일시적으로 반려동물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격리장에 넣어두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바. 체고 40cm, 체중 25kg를 기준으로 중·소형견과 대형견으로 구분하여 해당 주일에 출입한다.
- 사. 견주는 반려동물 간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놀이터 관리자는 반려동물 간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다.
- 아. 놀이터 내에서는 음주와 흡연 및 음식물 반입(반려견 간식 등)을 금지한다.
- 자. 그 밖에 관리자가 안전 등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입마개 착용 후 입장 가능한 반려동물

- 가.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반려동물
- 나. 관리자가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반려동물

3. 사고에 대한 책임

- 가.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교상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주에게 있다.
- 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놀이터의 시설이 훼손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으로 관리자에게 변상해야 한다.

■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 [별지 서식]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확인 및 출입대장

【 20 년 월 일 요일 】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함에 있어 반려견과의 마찰(싸움 등)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피해를 준 반려견주(소유자 등)에게 있으며, 다만 중소형견, 대형견별 이용기준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위반견주가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연번	반려견 개체 정보				출입자 인적사항				
	이름	품종	등록번호	체형	견주 성명	거주지 (읍/면까지만 기재)	연락처	인장 인원	서명
				<input type="checkbox"/> 중소형 <input type="checkbox"/> 대형				명	
				<input type="checkbox"/> 중소형 <input type="checkbox"/> 대형				명	
				<input type="checkbox"/> 중소형 <input type="checkbox"/> 대형				명	
				<input type="checkbox"/> 중소형 <input type="checkbox"/> 대형				명	
				<input type="checkbox"/> 중소형 <input type="checkbox"/> 대형				명	
				<input type="checkbox"/> 중소형 <input type="checkbox"/> 대형				명	
				<input type="checkbox"/> 중소형 <input type="checkbox"/> 대형				명	
				<input type="checkbox"/> 중소형 <input type="checkbox"/> 대형				명	
				<input type="checkbox"/> 중소형 <input type="checkbox"/> 대형				명	
				<input type="checkbox"/> 중소형 <input type="checkbox"/> 대형				명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
비용첨부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축산과장 정대훈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가. 포유류
 - 나. 조류
 -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6.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12.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13.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등록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3. 등록동물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